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86호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현실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계속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안 제2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3. 1. 31. ~ '23. 2. 20.)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23.1.30.)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86호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48호, 2020.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2023년 2월 24일까지”를 “ 2026년 2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u>2023년 2월 24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 ----- -- <u>2026년 2월 24일까지</u> ----- -----.